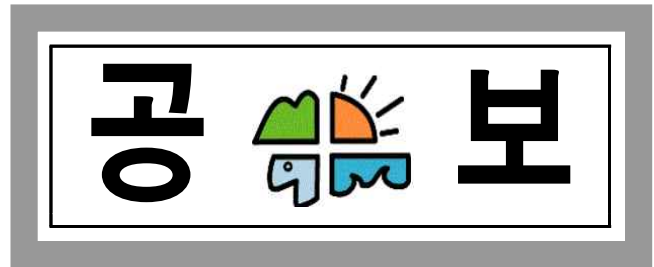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504호 2023년 11월 24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대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.. 2

공 고

-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공고 5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속초 도시관리계획(대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속초시 고시 제2023-122(2023. 8. 29.)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대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3년 11월 24일
속 초 시 장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53	대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	-	증) 34,783	34,783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53	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753-3번지 일원	34,783	□ 도시 기능·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시설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	34,783	-	34,783	100	
자연녹지지역	19,385	-	19,385	55.7	
제1종일반주거지역	15,398	-	15,398	44.3	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■ 교통시설(도로) 총괄표

유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	연장	면적	노선	연장	면적	노선	연장	면적	노선	연장	면적
	수	(m)	(m ²)	수	(m)	(m ²)	수	(m)	(m ²)	수	(m)	(m ²)
합계	1	48	756	-	-	-	-	-	-	1	48	756
중로	1	48	756	-	-	-	-	-	-	1	48	756

■ 교통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 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주요 경과 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 급	류 별	번 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3	67	10 ~ 13.5	국지 도로	48	대포동 304-2	대포동 454-6	일반 도로	-	-	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가구 번호	획지 번호	획 지				비 고
				위 치	면적(㎡)			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1	40	BL1	A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-1번지 일원	7,258	-	7,258	공동주택
			B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1-1번지 일원	279	-	279	공공시설

※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광장으로 기부채납 예정임.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 (획 지 번 호)	구 분	결 정 내 용
A-1	대포동 753-3번지 일원	용도	허용 ◦ 「주택법」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, 제13호의 부대시설 및 제14호의 복리 시설
			불허 ◦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 폐 율	◦ 자연녹지지역 20% 이하, 제1종일반주거지역 60% 이하
		용 적 륜	◦ 전체 용적률 60% 이하
		높 이	◦ 지하2층, 지상4층 이하(특화경관지구 3층 이하)
		배 치	◦ 도면참조
		형 태	◦ 도면참조
		색 채	◦ 도면참조
		건 축 선	-

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없음)

도면번호	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A-1	대포동 753-3번 지 일원	◦ 단지내 조정 - 「건축법」 및 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 성	
		◦ 차량진출입허용구간 -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 구 설치 - 교통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는 차량 진·출입구 설치	
		◦ 주차장 설치기준 - 「주차장법」 및 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의 한	
		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2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승인 도면 : 실음생략

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,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 허가 고시(공고)

속초시 공고 제2023-1088호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10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(소하천,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·사용)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속 초 시 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자)	상호 및 명칭			
	대표자 (성명)	박부*	주소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번영로 67번길 **
소하천명		중도문천		
공사 (점용·사용) 개요	위치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821-105, 821-117, 823-1, 824-2, 1338-11		
	면적	5.8㎡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㎡
	기간	2023. 11. 16.~2027. 12. 31.		
	목적 및 사유	(야영장신축에 따른)오수관로 매설		